

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 화재·폭발예방 안전수칙

페인트와 같은 인화성 물질은 작은 불씨로도 화재·폭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!



최근 화재·폭발 사고사례

'26년 1월 경북 칠곡군 소재 제조업체에서 바닥 도색작업 중 화재 발생(사망 1명)

'26년 4월 전남 완도군 소재 냉동창고에서 페인트 제거작업 중 화재 발생(소방관 2명 사망)

화재·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취급 시 화재·폭발 예방조치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인화성 액체*의 증기 등이 있는 장소에서는 가스농도 측정 및 충분한 환기 <small>* 페인트, 시너, 휘발유, 등유, 알코올류 등</small> |
|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인화성 물질 저장·취급 장소에서는 방폭기구 외 전기기계·기구 사용 금지 |
|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정전기 발생 억제 및 제거를 위해 대전방지 안전화, 제전복 등 착용 |
|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인화성 물질 주변에서는 용접·용단 등 화재위험작업* 금지 및 정전기 등 점화원과 차단·격리 <small>* 용접·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 사용 작업,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</small> |
|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·폭발 예방조치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화재위험작업 전 작업장 및 설비(배관·탱크·드럼 등) 내부의 인화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농도 측정 실시 |
|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화재위험작업 시 용접방화포 등 불꽃·불티의 비산방지조치 실시 |
|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|
| 화재 대비 비상조치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 소화·경보설비 설치 |
|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비상통로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유무 및 관리상태 확인 |
|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화재예방·비상대피 등에 대한 안전교육·비상대피훈련 실시 및 결과 확인 |